

## 제 106 차 이 사 회 회 의 록

일 시 : 2020년 12월 17일 17시 00분 ~ 18시 00분

장 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다자간 메시지를 활용하여 진행

재적이사 : 총 8명 중 6명 참석 (이사 6명, 감사 1명)

안 건 : 1. 법인 및 시설별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

2. 법인 및 시설별 2021년 예산 및 사업계획

3. 시설별 운영규정 개정

(로템노인요양원,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로템직업재활센터)

4. 기본재산 부동산 임대 계약 갱신

- 대표이사 김경년 목사 : 기도 후

이사 6명 참석으로 개최성수가 됨으로 개최를 선언하다

- 서기 박종건 이사 :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묻다.

- 강가환 이사 : 전 회의록을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 김동환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전 회의록을 원안대로 받자는 안에 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제1안 : 법인 및 시설별 2020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대표이사 : 본 안건은 운영시설별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임이사와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각각 보고 받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다.

- 시설의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광태영 상임이사과 설미자 원장, 정신모 관장, 김소덕 원장, 제정미 원장 순서로 보고하다(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광태영 상임이사 : 로템복지재단의 2020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550,991,000원에서 454,389,000원으로 편성하다. 그 사유로는 세입에서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감소하였지만 기타예금이자수입과 기타잡수입은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자산취득비가 감소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음을 설명한다.
- 설미자 원장 : 로템노인요양원의 2020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2,362,308,000원에서 2,403,678,000원으로 편성하다. 주요 개정 사유로 세입에서 입소자부담금수입과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잡수입은 감소하였지만 요양급여수입은 증가하였고, 세출에서 전체적인 사무비와 사업비, 잡지출은 증액하고 재산조성비와 전출금은 감액 조정함을 설명하다.
- 설미자 원장 : 로템재가노인지원센터의 2020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1,022,446,000원에서 948,377,000원으로 감소하여 편성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이용인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이 감소함을 설명하다.
- 정신모 관장 :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의 2020년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3,356,526,000원에서 3,139,029,000원으로 편성함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휴관이 장기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이 감소함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 정신모 관장 : 만덕로템노인대학의 2020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7,460,000원에서 2,273,000원으로 편성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휴관되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세입세출예산이 감소함을 설명하다.
- 정신모 관장 : 만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2020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125,241,000원에서 113,151,000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축소 운영 및 휴관하게 됨으로써 이용자가 감소하여 이용료수입 및 사업비 등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이 감소함을 설명하다.

원본대조필 (인)

- 김소덕 원장 : 로템직업재활센터의 2020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883,000,000원에서 937,400,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다. 주요 개정사유로 세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수입(소독방역)과 기타보조금(방역물품 지원)은 증가하였으나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이용 제한으로 증식보조금 수입과 본인부담금인 잡수입이 감소하다. 이에, 세출에서는 직업재활사업비는 증가하고 급식사업비 감소로 이어짐을 설명하다.
- 제정대 원장 :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만덕아이꿈자람터의 2020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81,956,000원으로 81,910,000원으로 다소 감액하여 편성하고, 세입과 세출의 주요 개정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다.
- 대표이사 : 각 시설들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곽태영 상임이사 : 올 한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시설 이용 제한이나 휴관으로 이용자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되거나 소폭 증가하였더라도 시설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산과목별로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과 운영시설이 남은 한해 회계 집행과 사업 진행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이용자와 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다.
- 김동환 이사 : 위 의견과 예산안에 동의하다.
- 강가환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이번 심의 안건의 가부를 물으니,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안 : 법인 및 시설별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 대표이사 : 본 안건은 사회복지법인 로템복지재단, 로템노인요양원과 로템재가노인지원센터, 만덕종합사회복지관과 만덕로템노인대학, 만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로템직업재활센터,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만덕아이꿈자람터의 2021년

원본대조필 인

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상임이사  
와 각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다.

- 법인 및 시설의 2021년도 시설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곽태영 상임이사,  
설미자 원장, 정신모 관장, 김소덕 원장, 제정미 원장 순서로 보고하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 요 내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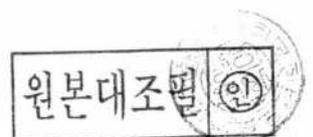
- 곽태영 상임이사 : 사회복지법인 로템복지재단의 2021년도 운영계획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526,360,000원, 수익사업회  
계는 30,020,000원으로 제정함을 보고하다. 특히, 세입에서 로템노인요양원과  
로템재가노인지원센터로부터의 전입금은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지출할 계획임  
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 설미자 원장 : 로템노인요양원의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2,428,352,000원, 특별회계는 60,620,000원으  
로 제정함을 설명하다.
- 설미자 원장 : 로템재가노인지원센터의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955,599,000원, 특별회계는 61,162,000원  
으로 제정함을 설명하다.
- 정신모 관장 :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의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3,225,476,000원으로 제정함을 설명하다.
- 정신모 관장 : 만덕로템노인대학의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7,010,000원으로 제정함을 설명하다.
- 정신모 관장 : 만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130,120,000원으로 제정함을 설명하다.

원본대조필 인

- 김소덕 원장 : 로템직업재활센터의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과, 이에 다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1,036,000,000원으로 제정함을 설명하다. 사업수입(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은 세출 예산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 임금,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원자재구입비, 직업재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 관리운영비와 영업홍보활동비, 직업적응 및 재활사업비, 작업장 환경 개보수 등에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하다. 특히, 소득방역이나 청소 등 생산판매활동으로 초과 발생한 직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수익금으로 집행하며 전년도 결산서 상의 수익금으로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 제정미 원장 :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만덕아이꿈자람터의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87,904,000원으로 제정함을 설명하다.
- 대표이사 : 법인과 각 시설들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김용순 감사 : 현재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인 및 시설들이 관계 법과 지침을 잘 준수하여 내년에도 목표한 계획들이 원활히 달성하기를 당부하다.
- 박종건 이사 : 회의자료와 설명을 들어보니 각 시설별 특성과 현재의 사회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균형 있게 제정되었다고 보여진다.
- 김동환 이사 : 위 의견과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에 동의하고 세부 집행 계획을 승인하였으면 하다.
- 최종환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이번 심의 안건의 가부를 물으니,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안 :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 대표이사 : 이번 심의 안건은 운영시설별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설장이 설명하겠다.



— 설미자 원장 : 로템노인요양원(병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운영규정은 복무규정 제52조(병가)와 제54조(경조휴가)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을 설명하다(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로템노인요양원(병설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개정대상 운영규정	복무규정 제52조(병가) 제1항																																																													
개정사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12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제52조 (병가) ① 시설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가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 (병가) ① 시설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가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01.01.)																																																													
개정대상 운영규정	복무규정 제54조(경조휴가) 제1항, 제3항~제5항, 제7항(신설)																																																													
개정사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12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제54조 (경조휴가)	제54조 (경조휴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결혼</td> <td>본인</td> <td>5</td> <td rowspan="3">사망</td>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자녀</td> <td>1</td>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1</td>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 rowspan="2">회갑 및 고회</td> <td>본인 및 배우자</td> <td>1</td> <td rowspan="2">출산</td>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1</td> <td>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p>*경조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p> <p>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한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③ 전항의 경조휴가 기간 중에 휴(무)일이 있을 경우 휴(무)일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자녀 결혼은 예외로 한다.</p> <p>④ 경조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p> <p>⑤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휴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p>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회갑 및 고회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배우자	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결혼</td> <td>본인</td> <td>5</td> <td rowspan="3">사망</td>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자녀</td> <td>0</td>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2</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0</td>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2</td> </tr> <tr> <td rowspan="2">회갑 및 고회</td> <td>본인 및 배우자</td> <td>0</td> <td rowspan="2">출산</td>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0</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0</td> <td>배우자</td> <td>30일</td> </tr> </tbody> </table> <p>*경조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p> <p>① _____(표변경 2021.01.01.)</p> <p>③ _____다만, 자녀 결혼은 예외로 한다. (삭제 2021.01.01.)</p> <p>④ 삭제(2021.01.01.)</p> <p>⑤ 삭제(2021.01.01.)</p> <p>⑦ 회갑 및 고회의 경우 5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2021.01.01.신설)</p>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0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회갑 및 고회	본인 및 배우자	0	출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0	배우자	30일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회갑 및 고회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배우자	1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0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회갑 및 고회	본인 및 배우자	0	출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0		배우자	30일																																																									

원본대조필 ①

— 정신모 관장 :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 운영규정은 오래전 만들어져 현재 변경된 관련 법과 지침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

개정대상 운영규정	복무관리규정 제50조- 경조휴가																																																																
개정사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개정 전		개정 후																																																															
<p>①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한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 align="center">&lt;경조사별 휴가일수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결혼</td> <td>본인</td> <td>5</td> <td rowspan="3">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자녀</td> <td>1</td>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2</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1</td> <td>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td> <td>1</td> </tr> <tr> <td rowspan="2">회갑 및 고회</td> <td>본인 및 배우자</td> <td>3</td>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2</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1</td>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3</td>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1	회갑 및 고회	본인 및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출산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p>①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한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 align="center">&lt;경조사별 휴가일수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5</td> <td rowspan="3">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자녀</td> <td>1</td>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3</td> </tr> <tr> <td rowspan="2">입양</td> <td rowspan="2">본인</td> <td rowspan="2">20</td>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10</td>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입양	본인	2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1																																																												
회갑 및 고회	본인 및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출산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입양	본인	2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개정대상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 제7조 - 구성																																																																
개정사유	인사관리 운영 강화 규정에 따른 외부인사 포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및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 준용																																																																
개정 전		개정 후																																																															
<p>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1. 위원장 : 법인 대표이사</p> <p>2. 위 원 : 부장, 관장, 상임이사,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원 3명</p> <p>3. 간 사 : 위원장이 위촉한 자</p>		<p>위원회는 5인 이상 <u>출수로</u>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p> <p>4. 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p> <p>5. 위 원 : 시설장, 중간관리자, 상임이사,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원, 외부인사 등</p> <p>6. 간 사 : 인사 담당자</p>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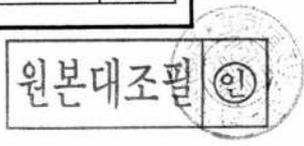
개정대상 운영규정	취업규칙 전반
개정사유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반영을 통한 현행화 및 관련법 신설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p>1장 총칙 2장 인사 3장 복무 4장 임금 5장 퇴직 및 해고 6장 교육 7장 복리후생 8장 안전 및 보건 9장 재해보상 10장 남녀고용평등 11장 모성보호 12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13장 포상 및 징계 14장 기타</p>	<p>1장 총칙 2장 복무 3장 인사 4장 근로시간 5장 휴일휴가 6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7장 임금 8장 퇴직 해고 등 9장 퇴직급여 10장 표창 및 징계 11장 교육 12장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13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14장 안전보건 15장 재해보상</p>
	<p align="center"><b>&lt;신설&gt;</b></p> <p><b>제12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b>  <b>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b>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업주, 임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제69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b> 기관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li> <li>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li> <li>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li> <li>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li> <li>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li> <li>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li> <li>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 일만 시키는 행위</li> <li>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li> <li>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li> </ol>

원본대조필 인

— 김소덕 원장 : 로템직업재활센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운영규정은 복무규칙 2장 제11조(유급휴일)과 3장 제20조(특별휴가)에 관한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적 용어로 수정하고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직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로템직업재활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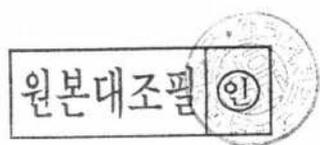
개정대상 운영규정	직원 복무규칙 제2장 근무시간																																																					
개정사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수정 및 현실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p>제11조(유급휴일) ① 한 주간 소정의 근로 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유급휴일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공무원법에 준한 국가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p> <p>③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p> <p>④ 법인 및 시설 창립기념일 등은 유급휴일로 할 수 있다.</p>	<p>제11조(유급휴일) ① 한 주간 소정의 근로 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유급휴일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p> <p>③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p> <p>④ 법인 및 시설 창립기념일 등은 유급휴일로 할 수 있다.</p>																																																				
개정대상 운영규정	직원 복무규칙 제3장 휴가																																																					
개정사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 권고 사항 준용 및 현실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p>제20조(특별휴가) 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1. 경조관계(붙임_1 참조)</p> <p>2. 직원이 현저한 공을 세웠을 때에는 시설장은 1주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p> <p>3. 특별휴가일이 5일 이상일 때,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p>	<p>제20조(특별휴가) 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1. 경조관계(붙임_1 참조)</p> <p>2. 직원이 현저한 공을 세웠을 때에는 시설장은 1주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p> <p>3.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적용 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결혼</td> <td>① 본인</td> <td>07일</td> </tr> <tr> <td>② 자녀</td> <td>02일</td> </tr> <tr> <td>③ 형제·자매</td> <td>01일</td> </tr> <tr> <td rowspan="2">회갑</td> <td>① 본인 및 배우자</td> <td>03일</td> </tr> <tr> <td>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01일</td> </tr> <tr> <td rowspan="3">사망</td> <td>① 배우자</td> <td>06일</td> </tr> <tr> <td>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05일</td> </tr> <tr> <td>③ 자녀, 형제·자매, 백부모</td> <td>03일</td> </tr> <tr> <td rowspan="2">출산</td> <td>① 본인</td> <td>90일</td> </tr> <tr> <td>② 배우자</td> <td>03일</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 대상	일수	결혼	① 본인	07일	② 자녀	02일	③ 형제·자매	01일	회갑	① 본인 및 배우자	03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01일	사망	① 배우자	06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05일	③ 자녀, 형제·자매, 백부모	03일	출산	① 본인	90일	② 배우자	03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적용 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5일</td> </tr> <tr> <td>자녀</td> <td>1일</td> </tr> <tr> <td rowspan="5">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td> <td>5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3일</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3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일</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10일</td> </tr> <tr> <td>입양</td> <td>본인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td> <td>20일</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20일
구분	적용 대상	일수																																																				
결혼	① 본인	07일																																																				
	② 자녀	02일																																																				
	③ 형제·자매	01일																																																				
회갑	① 본인 및 배우자	03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01일																																																				
사망	① 배우자	06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05일																																																				
	③ 자녀, 형제·자매, 백부모	03일																																																				
출산	① 본인	90일																																																				
	② 배우자	03일																																																				
구분	적용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20일																																																				



- 대표이사 : 위 개정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최종환 이사 : 현재의 관련 법과 지침 준용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 개정 되었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안에 동의하다.
- 박종건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이번 심의 안건의 가부를 물으니,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4안 : 기본재산 부동산 임대 계약 갱신 심의**

- 대표이사 : 이번 안건은 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임대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광태영 상임이사가 설명하겠다.
- 광태영 상임이사 : 현재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109번길 8)의 4층과 5층을 월2,500,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덕천교회에 임대하고 있다. 2021년 1월 31일자로 5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 강가환 이사 : 덕천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현재의 계약과 동일하게 5년간 임대하기를 제안한다.
- 최종환 이사 : 위 계약 갱신안에 동의하다.
- 김동환 이사 : 제청하다.
- 대표이사 : 이번 안건의 가부를 물으니,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대표이사 : 이사들의 참석과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회가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박종건 이사 : 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사전원이 기명날인 하다.
- 대표이사 : 기도 후 폐회를 선언하다.

대표이사 **김경년** (인) 이 사 **박종건** (인)  
 상임이사 **박태영** (인) 이 사 **최종환** (인)  
 이 사 **강가현** (인) 이 사 **최동환** (인)  
 감 사 **김영선** (인)

2020년 12월 17일

사회복지법인 로템복지재단 (직인)



원본대조필 (인)